

요약

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 의하면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이행으로 주주자본이 감소하였으며, IFRS4에서 IFRS17로 전환함에 있어 공정가치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, 보험부채 측정 시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에 서로 다른 측정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. IFRS17과 SolvencyII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확률가중치를 사용하는 등의 유사점이 있으나,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른 만큼, 보험부채와 책임준비금과의 정량적 차이, 할인율, 위험조정과 위험마진 등의 차이가 존재함

- 유럽보험연금감독청(European Insurance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, 이하 'EIOPA')는 유럽 보험 회사의 IFRS17 이행 현황 및 IFRS17과 SolvencyII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¹⁾
 - IFRS17은 보험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, 방법론적 차이를 줄이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으로 IFRS4를 대체함
 - IFRS4 회계기준은 각국의 다양한 회계관행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과도기적인 기준으로,²⁾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평가로,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임³⁾
 - EIOPA는 17개 EU 회원국의 53개 보험회사의 2023년 반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함
- 유럽보험회사의 약 50% 정도는 IFRS17 도입으로 주주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IFRS17로 전환함에 있어 공정가치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,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부채 측정모형을 달리함
 - 보험회사 중 IFRS17 이행 후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46%는 주주자본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, 28%는 주주자본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, 26%는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함(그림 1) 참조
 - 보험회사는 IFRS17의 항목인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(Contract Service Margin, 이하 'CSM')을 통해 보험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보험계약기간 동안 기대이익을 할당할 수 있게 되었음
 - IFRS4에서 IFRS17로 전환할 때 완전소급법, 수정소급법 그리고 공정가치법을 허용하고 있는데, 전체 부채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부채의 비중이 41.9%로 공정가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(그림 2) 참조
 - 기본적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에 계약체결 당시 IFRS17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는 완전소급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

1) EIOPA(2024. 4. 15), "The implementation of IFRS17-Insurance contracts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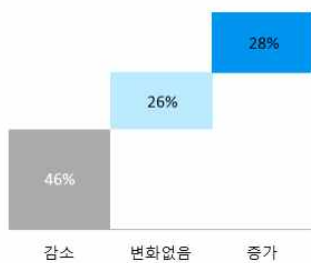
2) 보험연구원(2023. 3), 『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: 경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』

3)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2. 12. 29), "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(IFRS17)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응: 경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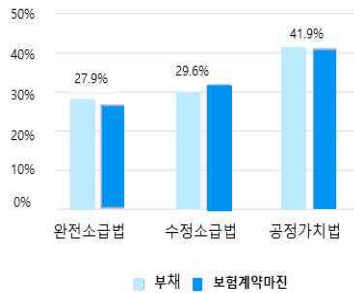
지만,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보험계약에 데이터 조정이 허용되는 수정소급법과 이행현금흐름과 계약공정가치의 차이를 CSM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법이 있음

- 생명보험계약 부채의 86.4%에 변동수수료접근법(Variable Fee Approach, 이하 'VFA')을 적용한 반면, 손해보험계약은 부채의 약 90%에 보험료배분접근법(Premium Allocation Approach, 이하 'PAA')를 적용함(그림 3) 참조
 -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모형으로 일반모형(General Model, 이하 'GM'), VFA, PAA 모형을 허용하고 있는데, PAA는 주로 단기계약에 적용되는 반면, GM을 수정한 VFA는 대부분 저축보험에 적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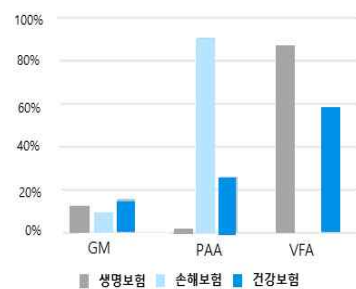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주주자본에 미치는 영향



〈그림 2〉 전환방법



〈그림 3〉 보험부채 측정모형



자료: EIOPA(2024. 4. 15), "The implementation of IFRS17-Insurance contracts"

○ IFRS17과 SolvencyII는 미래현금흐름을 확률가중추정치로 추정하는 등 유사한 점도 있으나,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른 만큼, 보험부채와 책임준비금의 정량적 차이, 할인율, 위험조정과 위험마진 등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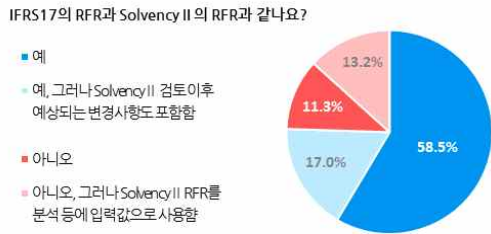
- IFRS17은 기업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, SolvencyII는 보험계약자 보호가 목적임
- IFRS17의 보험부채(CSM 제외)와 SolvencyII 책임준비금을 비교하면 생명보험계약은 보험부채가 책임준비금보다 2.5% 작지만,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PPA 적용 계약 때문에 보험부채가 책임준비금보다 9.5% 큼
- IFRS17 무위험이자율(Risk Free Rate, 이하 'RFR') 산출 시 보험회사의 75%는 SolvencyII의 'RFR'에 의존하고 있으며(〈그림 4〉 참조), IFRS17의 할인율이 SolvencyII의 할인율보다 높은 보험회사의 비중은 58%임
 - SolvencyII는 EIOPA가 계산하여 발표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지만, IFRS17은 매칭조정(MA)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RFR과 관련된 조정(예: 유동성프리미엄)을 직접 산출할 의무가 있으며, IFRS17에서 관찰되는 기간의 최종단기(Last liquid point)가 더 길 수 있고, 신용위험조정 등으로 IFRS17의 할인율이 높음
- 위험조정과 위험마진은 두 제도의 중요한 차이로 생명보험은 IFRS17의 위험조정이 SolvencyII 위험마진보다 GM과 VFA에서 각각 33%, 44% 낮게 나타나며, 손해보험은 위험조정이 위험마진보다 11% 높게 나타남(〈그림 5〉 참조)
 - 위험조정은 비재무적 위험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며,⁴⁾ 위험마진은 가상의 양수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위험과 관련된 미래 자본 비용의 할인 가치로 정의됨⁵⁾

4) Milliman(2017. 12), "IFRS17: Risk Adjustment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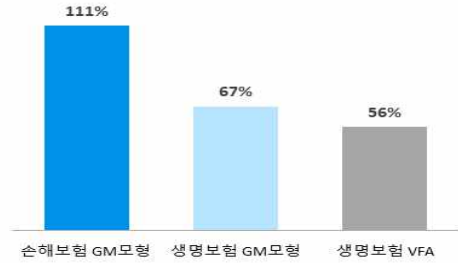
5) A. J. Pelkiewicz, S. W. Ahmed, P. Fulcher, K. L. Johnson, S. M. Reynolds, R. J. Schneider and A. J. Scott(2020), "A review of the risk margin - SolvencyII and beyond"

- SolvencyII는 위험마진 계산방법과 위험마진에 대한 신뢰수준을 지정하는 반면, IFRS17에서는 원칙에 따라 위험조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, PAA는 잔여보장부채에 대해 위험조정을 산출하지 않음

〈그림 4〉 IFRS17에서 SolvencyII 무위험이자율 사용 여부



〈그림 5〉 위험마진 대비 위험조정 비율



자료: EIOPA(2024. 4. 15), "The implementation of IFRS17-Insurance contracts"